

군산문화관광재단 2025 직원 채용계획 재공고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8일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위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비고
경영기획팀 팀 원(9급)	1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문화예술 정책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예산, 복무, 인사, 온/오프라인 홍보, 보도지원 등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신규사업 발굴 지원	

- * 위 기재사항은 응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무내용을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임.
- * 향후 재계약은 성과평가(국·도비 공모사업 등 추진성과)를 통해 계약 연장 결정

2 보수 및 복무

채용직위	채용등급	연봉	근무시간	근무장소
팀 원	임기제(9급상당)	30,000천원	주40시간	군산문화관광재단

- *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액의 하한액
- * 연봉 이외에도 수당 별도지급(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3

채용근거

- 군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무국 직원의 임면)
- 군산문화관광재단 정관 제3장 제21조(직원의 채용)
- 군산문화관광재단 인사·복무규정

4

응시자격 기준

- 공통요건 (적용 기준일 : 최초 공고일 현재)
 - 만 18세 이상인 자(만 60세 정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자격 제한 (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군산문화관광재단 인사·복무규정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비리에 적발되어 재단 직원 채용 합격이 취소된 자 중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채용 자격요건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다음 채용예정 분야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위	자 격 기 준	비고
팀 원 (9급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2025년 2월 졸업예정 포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2년 이상의 경력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9급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의 경력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 공통 문화관광기획, 문화관광콘텐츠, 문화예술·관광·방송예술 분야 등 (경영기획팀 추가인정경력) 재단법인, 법인회사 경영지원 분야 근무경력 	

* 졸업예정자(학사 이상의 학위)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졸업예정일 기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 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5 채용절차

□ 1차 전형 : 서류전형

- 대 상 자 : 팀원 지원자 전체
- 심사일자 : 2025. 1. 21.(화) *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심사내용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 여부, 담당예정 직무의 현장수행 적합 여부, 경력과의 관련 정도, 적응 능력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합격 결정.

□ 2차 전형 : 면접심사

- 대 상 자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면접 시행
- 심사일자/장소 : 2025. 1. 24.(금) / 군산콘텐츠팩토리 2층 회의실(예정)
 - * 면접응시자 수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음
- 면접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평점요소 : 5개 항목, 총 100점

구분	심사 및 평가항목	배점
1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점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점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4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20점
5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20점
계		100점

-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 실시 (서류시험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적정인원별로 구분 지어 면접 진행, 각 조별 최고 득점자중 재면접 실시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 면접결과 공개 :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점수 공개(단 평가항목 세부별 점수는 비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제2023-225호 / 의결 : 2023.2.28.)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결정 후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진행
- *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채용 취소, 퇴직,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7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고
채용공고	2025. 1. 9.(목) ~ 2025. 1. 20.(월) 18:00 까지	초일불산입 11일
원서접수	2025. 1. 9.(목) ~ 2025. 1. 20.(월) 18:00 까지	공휴일 제외 7일
1차(서류전형)	2025. 1. 21.(화) 예정	
서류합격자 공고	2025. 1. 22.(수) 예정	
2차(면접심사)	2025. 1. 24.(금) 예정	면접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 31.(금) 예정	
등록서류 작성	2025. 2. 3.(월) 예정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2025. 2. 3.(월) ~ 2. 5.(수) 예정	
임용예정일	2025. 2. 6.(목) 예정	

* 추후 재단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

* 채용일정의 경우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23. 12. 12.)」 III. 직원의 인사 중 [공고 시기] 참고

8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1. 9.(목) ~ 2025. 1. 20.(월)
- 접수기간 : 2025. 1. 9.(목) ~ 2025. 1. 20.(월) 18:00까지
 - * 접수 마감일은 2025. 1. 20.(월) 18:00까지 도착분에 유효함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전자우편 : wldms0402@gunsanconf.or.kr(2025. 1. 20.(월) 18:00까지)
 -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발송 후 채용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전화 진행
 - * 전자우편 접수 시 “[군산문화관광재단 직원채용] 지원분야-성명” 으로 설정하여 송부
 - * 전자우편 발송 시 지원서류의 경우 통합된 1개의 파일(PDF)로 제출 요망
- 등기우편 : 54026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해망로 146-24(금암동)
(재)군산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제출 시 지원서 봉투에 “지원서 재증” 을 표기하기 바람.

○ 방문접수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 문 의 처 : (재)군산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팀 채용담당자(063-443-4803)

* 제출 시 지원서 內 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제출 요망, 제출서류 미비 및 누락의 경우 지원자 책임이며,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9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원서접수 시 (필수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 지원서류 현황표 • 응시자격 요건 자가점검표(별지 제1호 서식) • 입사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소정양식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고등학교, 대학교(졸업예정) 등)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 자격증 사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해야 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별지서식)’ 추가 제출

* 이력서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등 자료 제출

- 응시자는 채용자격 기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 접수 바람. 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및 유효기간 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함.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채용조건에 맞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 집 전화,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지원서 허위 작성, 위·변조 제출 등은 어느 단계에서든 불합격으로 처리(합격 이후도 포함)이며, 이로 인한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보다 적은 경우,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이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군산시, 군산문화관광재단) 시험/채용란에 공고.
- 최종 합격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채용 취소, 퇴직,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된 경우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받을 수 있음.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현장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채용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